

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6. 7. 1.>

홍수통제소의 관할구역(제43조 관련)

명칭	관할 구역
한강홍수통제소	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(금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·강원특별자치도(낙동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일원과 충청북도 중 한강 및 안성천수계지역, 충청남도 중 안성천수계지역, 경상북도 중 한강수계지역
낙동강홍수통제소	부산광역시·대구광역시·울산광역시·경상북도(한강 및 금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·경상남도(섬진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일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·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 낙동강수계지역
금강홍수통제소	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(한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·충청남도(안성천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일원과 경기도·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중 금강수계지역
영산강홍수통제소	전남광주통합특별시(낙동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·전북특별자치도(낙동강 및 금강수계지역은 제외한다) 일원과 경상남도 중 섬진강수계지역